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도참고자료**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|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배포일시 | 2018. 10. 12(금) | 담당부서 | 한미FTA대책과 |
| 담당과장 | 장성길 과장(044-203-5940) | 담 당 자 | 구진경 서기관(044-203-5951) |

# 정부,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

□ 정부는 **'18.10.12(금) 한-미 자유무역협정**(FTA) **개정 의정서***에 대한 **비준동의안**을 **국회에 제출**했다.

*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,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

○ 동 비준동의안은 '18.9.24.(월) 정식서명 후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*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12일 국회에 제출했다.

* 국회 비준동의 요청시 영향평가 결과 등 사항을 함께 제출토록 규정

□ 향후 한-미 **자유무역협정**(FTA)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**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**하는 때에 **발효**하게 된다.

【붙 임】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과장(☎044-203-59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

□ ‘17.8.22 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

□ ‘17.10.4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

□ ‘17.10~12월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통상절차법’)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* 진행

* 경제적 타당성 검토(‘17.10~11월), 제 1차(‘17.11.10)/제 2차(‘17.12.1) 공청회, 국회보고(‘17.12.18) 등

□ ‘18.1.5 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(미국)

□ ‘18.1.31~2.1 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(한국)

□ ‘18.3.15~16 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(미국)

□ ‘18.3.24 ‘원칙적 합의’ 도출

□ ‘18.9.3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

□ ‘18.9.24 정식서명(미국)

□ ‘18.10.2 통상절차법(제12조*)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

* 서명 후 주요내용 등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

□ ‘18.10.12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